제21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1년 / 0월 / 일

中个小砂利2息®



여수시 조례 제1666호 붙임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. 여수시 조례 제1666호

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「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」"를 "「여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"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단서에서 "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등"이란"을 "단서에 따라"로, "을 말한다"를 "은 영 제7조제1항제1호·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,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영 제14조제3항·제4항에 따라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1.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2.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

3.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였을 때 높이가 4미터 미만인 것

제12조제1항 본문 중 "15일"을 "20일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15일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본문의 기간"을 "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제1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수 있다.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.

제13조제1호 중 "광고물 등"을 "옥상간판"으로 한다.

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항에"를 "시장은 제1항에도"로, "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"를 "경우에는"으로 한다. 별표7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과태료 부과기준(제25조 관련)

위반행위(광고물의 종류)	근 거 법조문	과태료
1.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	법 제20조	
판·현수막·벽보·전단을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		
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		
을 제작·표시한 경우	2	
기. 입간판		
1) 도로(보도를 포함한다)에 설치한 경우		
가) 연면적 1㎡ 미만		
- 0.5㎡ 미만		13만원
- 0.5㎡ 이상 0.8㎡ 미만		22만원
- 0.8㎡ 이상 1㎡ 미만		32만원
나) 연면적 1㎡ 이상 2㎡ 미만		
- 1m² 이상 1.3m² 미만		42만원
- 1.3m² 이상 1.6m² 미만		50만원
- 1.6m² 이상 2m² 미만		64만원
다) 연면적 2m² 이상 3m² 미만		
- 2m² 이상 2.3m² 미만		75만원
- 2.3㎡ 이상 2.6㎡ 미만		100만원
- 2.6m² 이상 3.0m² 미만		129만원
라) 연면적 3m² 이상		130만원+연면적 3㎡ 초과하는 면적의
		0.5㎡당 15만원을 더한 금액
2) 그 밖의 지역·장소에 설치한 경우		
가) 연면적 1㎡ 미만		
- 0.5㎡ 미만		8만원
- 0.5m² 이상 0.8m² 미만		12만원
- 0.8m² 이상 1m² 미만		14만원
나) 연면적 1m² 이상 2m² 미만		Ornlol
- 1m² 이상 1.3m² 미만		25만원 22미bol
- 1.3㎡ 이상 1.6㎡ 미만 - 1.6㎡ 이상 2㎡ 미만		33만원
- 1.0III 이상 ZIII 미인		49만원

다) 연면적 2㎡ 이상 3㎡ 미만	
- 2m² 이상 2.3m² 미만	58만원
- 2.3m² 이상 2.6m² 미만	67만원
- 2.6㎡ 이상 3.0㎡ 미만	79만원
라) 연면적 3m² 이상	80만원+연면적 10㎡ 초과하는 면적의
	1㎡당 15만원을 더한 금액
 나. 현수막	
가) 면적 3m ² 미만	
- 1㎡ 미만	8만원
- 1m² 이상 2m² 미만	12만원
- 2m² 이상 3m² 미만	14만원
나) 면적 3m² 이상 5m² 미만	14년 년
- 3m² 이상 3.7m² 미만	22만원
- 3.7㎡ 이상 4.4㎡ 미만	25만원
- 4.4m² 이상 5.0m² 미만	32만원
다) 면적 5㎡ 이상 10㎡ 미만	54년년
- 5.0㎡ 이상 6.0㎡ 미만	42만원
- 6.0㎡ 이상 8.0㎡ 미만	58만원
- 8.0㎡ 이상 10.0㎡ 미만	75만원
라) 면적 10㎡ 이상	80만원+연면적 10㎡ 초과하는 면적의
4) U = 10111 9 6	1㎡당 15만원을 더한 금액
	1111 6 15년년 의단 ㅁㅋ
다. 벽보	
1) 일반 광고내용	
- 1장 이상 10장 이하	장당 17천원
- 11장 이상 20장 이하	장당 25천원
- 21장 이상	장당 42천원
2)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	
- 1장 이상 10장 이하	장당 25천원
- 11장 이상 20장 이하	장당 33천원
- 21장 이상	장당 50천원
라. 전단	
1) 일반 광고내용	
- 1장 이상 10장 이하	장당 8천원
- 11장 이상 20장 이하	장당 17천원
- 21장 이상	장당 25천원

2)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- 1장 이상 10장 이하 - 11장 이상 20장 이하 - 21장 이상 2.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.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	법 제20조 제1항제1호 의3	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1만원에 1일째부터
<u>우</u>		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
나.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		10만원에 11일째부터
이하인 경우		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
나.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		70만원에 91일째부터
우		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
3.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	법 제20조	
하지 않은 경우	제1항제2호	
가. 30일 이상 90일 미만		67만원
나. 90일 이상 180일 미만		117만원
다. 180일 이상 1년 미만		217만원
라. 1년 이상		400만원
4.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		
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	제1항제5호	004101
가. 연 1회 위반한 경우		80만원
나. 연 2회 위반한 경우		200만원
다.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		500만원
5.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	법 제20조 제2항	
가. 1회 위반한 경우	0	25만원
나. 2회 연속 위반한 경우		40만원
다. 3회 연속 위반한 경우		100만원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안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조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(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제2조(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) ① 「옥외 신고의 제출서류 등) ① -----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 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_ 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7조제1 항 단서에서 "특별자치시, 특별 -- 단서에 따라 -----자치도, 시・군 또는 구의 조례 로 정하는 광고물 등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(이하 "광고물 등"이라 한다)을 말한 -----은 영 제7 다. <단서 신설> 조제1항제1호·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, 설명서 및 설계도서 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. 다 만. 영 제14조제3항·제4항에 따라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 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. 1.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 1.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상단의 높이가 간판 중 영 제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

미터 미만인 것

2. 영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영 제36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
3. 영 제3조제8호에 따른 애드 벌룬 중 높이가 4m 미만인 게 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것

4. ~ 6. (생략)

-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(영 제4조제 1항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)의 표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③ (생 략)
- 제12조(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운영등)①법제7조제1항에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(이하"심의위원회"라한다)는 안건이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해당 안건을심의하고 그결과를처리

- 2.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 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 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
- 3.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였을 때 높이가 4미터 미만인 것
- 4. ~ 6. (현행과 같음) <<u>삭</u> 제>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	순
영 등) ①	
<u>20일</u>	

- 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정 ------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본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- ② ~ ④ (생 략)
 - 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하며, 해당 안건이 접 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 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본문의 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.
 - 1. 2. (생략)
 - ⑥·⑦ (생 략)
 - <신 설>

제13조(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) 제13조(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) -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심 의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「민원처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_ 제21조 에 따라 처리기간----.
 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 ⑤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 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⑥·⑦ (현행과 같음)
- ⑧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심 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처리 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 해야 한다.

- 1. 높이 4미터 이상인 <u>광고물 등</u>의 표시 허가 및 신고에 관한사항
- 2. · 3. (생략)

제24조(수수료) ①・② (생 략)

- ③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- 1. ~ 3. (생략)

1 <u>옥상간판</u>
2. · 3. (현행과 같음)
제24조(수수료) ①・② (현행과
같음)
③ 시장은 제1항에도
<u>경우에는</u>
.
1. ~ 3. (현행과 같음)